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19

발의연월일: 2022. 8. 31.

발 의 자: 김수흥・김성환・최인호

김교흥 • 기동민 • 정일영

이명수 · 김민석 · 김윤덕

안규백 · 맹성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(이하 "농어촌주택등")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,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2021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,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 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(안 제99조4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	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	①
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	
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	
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	
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<u>202</u>	
<u>2년 12월 31일</u> 까지의 기간(이	-2027년 12월 31일
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	
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	
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	
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	
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	
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	
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	
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	
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	
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	
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	
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	
제3호를 적용한다.	<u>.</u>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⑧ (생 략)

1.•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